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지역에서 보전산지 등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어 산지관리법 등 소관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시설이 입지한 후에 보전산지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농림지역의 건축제한을 받게되어 입지한 시설의 증·개축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계획 기본원칙 추가(안 3-1-1-13. 신설)

농림지역에서 보전산지 등이 해제되어 해당 지역에 위치한 시설이 농림지역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는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등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검토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 팩스 : 044-201-5569
- 전자우편 : ljm080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 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